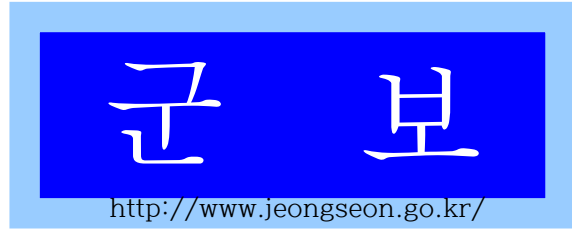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9호 2019. 4. 30. (화)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7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19-79호 정선군 납세자권리현장.....3
- 정선군 고시 제2019-81호 도로명 변경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19-85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483호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
(안).....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7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0	2019. 4. 16.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890-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79호

『정선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81호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일 : 2019. 4. 24. ~ 2019.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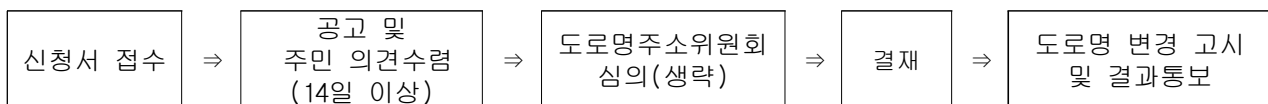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비 고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	기초번호		
정선군	고림길 1차중속구 간	63-1→ 63-150	고림터덕 길	1→150	고림으로 불리는 마을 지명 과 인쪽에 터가 크고 넓은 골 짜기라고 해서 터덕이라 불 리는 지명 인용	긴중속구간 도로명부여

※ 세부사항은 붙임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여 신청 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560-2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85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변경

연번	변 경 전 주 소	변 경 후 주 소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비고
1	강원도 정선군 남면 별어곡2길 17-4	강원도 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17-4	별어곡1길에 위치한 건물의 등록 오류 정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9조·제7조제7항)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483호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안)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사업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 사업목적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
- 지원기준 : 1개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포함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개선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 환경 개선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0%이상인 업체에 한함
- 지원 가능 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4. 24. ~ 5. 3. (10일)

나. 접수기간 : 2019. 4. 24. ~ 5. 7. (14일)

※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함. (토·공휴일 제외)

다. 교부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고시/공고」에서 직접 다운로드

라. 접수장소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선군 여성회관 1층)

※ 직접 방문하여 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4. 대상기업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나. 선정기준 : 여성고용 및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

다. 선정절차

- 신청기업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 기업 현장 직접 방문 개선 계획시설 확인 점검

라.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가. 여성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 나.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1부.
- 다.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 라. 여성친화진단 측정지표 1부.
-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바.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
- 사.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 시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하거나,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560-2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